

#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: 제2026-54호(2026. 6. 24.)
2. 점용·사용의 목적: 낚시터 조성을 위한 계류시설
3. 점용·사용의 장소: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29-1번지 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의 면적(기간): 2,460㎡(2026. 6. 23. ~ 2027. 6. 22.)
5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, 주소
  - 성 명: 부산시수협동삼어촌계(주) 대표 강양석
  - 주 소: 부산시 영도구 하리해안길 17-5(동삼동)

2026. 6. 24.

부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